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으로 개정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인공지능 영향평가,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 설립·인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교육 등이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하여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자구 변경

- ‘데이터 기반’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안 제1조/제2조/제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안 제16조)

다. 공유데이터 신청·허가 절차 폐지 및 보안관리 사항 개정(안 제6조 개정)

- 공공기관이 공유데이터를 이용할 때, 해당 데이터 보유기관에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데이터 폐기 사유를 간소화함
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추진(안 제13조 신설)

- 공공기관별 인공지능의 구축 방식, 데이터 형식 등이 상이할 경우, 기관 간 연계와 상호 협력이 어려우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마.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5조 개정)

- 범정부적 협력과 기관 간 정책 조율을 위해 신설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정함

바.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안 제21조 신설)

- 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 절차와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사. 인공지능 교육 위탁(안 제22조/제23조 신설)

- AI 챔피언 역량 인증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정함

아. 인공지능 영향평가(안 제24조~제30조 신설)

-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본격 시행을 위하여 적용 예외 사유, 실시대상, 위험관리 사항 등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제2조제3호다목”을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17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추진)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표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화 등의 반영 및 이행 실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준화 등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행정안전부차관을 의장으로 하며,

각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을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차관이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참석 대상자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건을 협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1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데이터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

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공무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량 수준별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관련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자격·경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인공지능 관련 교육의 운영 실적, 수행능력 및 교육과정의 전문성
3. 교육 내용·방법 및 교육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16조(종전의 제19조)제1항 중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20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중전의 제21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22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23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2. 인공지능의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 발생 가능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영향평가의 절차 등 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영향평가 적용의 예외)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책의 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이미 영향평가를 실시한 인공지능을 동일한 목적·대상 범위 및 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재도입하는 경우

3.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능·효과 검증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4.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26조(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의 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7조(영향평가의 결과 공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거나 요약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영향평가 실시의 의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영향평가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제29조(영향평가의 재실시)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1. 자동화 수준 상향, 행정 결정 지원 수준 변경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
2. 영향 대상 또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3.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시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안전사고 및 권리침해 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방안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구조
2. 담당자 지정 및 기록·로그 관리 계획
3. 성능 및 안전성 점검·검증 절차
4. 오류·편향·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 운영 중단·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 민원·이의제기·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운영

③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6년 12월 0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제1조(목적) 이 영은 「<u>데이터기 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u>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 <u>호다목</u>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란 다 음 각 호의 법인·기관 및 단체 를 말한다. 1. 2. (생 략) <u>제7조 (생 략)</u> <u>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 행계획의 수립절차 등)</u>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 7조제1항에 따른 <u>데이터기반행 정 활성화 시행계획</u>(이하 “시행	제1조(목적)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u>」----- -----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u>인공지 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에 관한 법률</u>」----- <u>제2조제5 호다목</u>----- ----- ----- -----. 1. 2. (현행과 같음) <u>제3조 (현행 제7조와 같음)</u> <u>제4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 차 등)</u> ① ----- ----- ----- <u>인공지능 및 데 이터 기반 행정</u> -----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활용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생략)

2. 보유기간의 경과, 데이터 이용 목적의 달성 등으로 데이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6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삭제>

<삭제>

-----.

1. (현행과 같음)

2. 데이터의 보유기간이 경과하였-----

터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할 것

3. (생략)

<신설>

<신설>

3. (현행과 같음)

제1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표준화의 추진) ① 법 제1
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
화 표준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
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고시된
표준화 등의 반영 및 이행 실태
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표준화 등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제11조 ~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공
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
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행정안전부차관을 의
장으로 하며, 각 기관의 인공지
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을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행정
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
부차관이 임명한다.

④ 협의회는 의장이 참석 대상
자를 정하여 소집할 수 있으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을
협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대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 ~ 제12조 (현행 제11조부
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4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제16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① -----

-----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원

3. 시·군·구(자치구를 말한
다):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
당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
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
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
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
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
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
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
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
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

제17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

1. (현행과 같음)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
정 -----

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컨설팅·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②·③ (생략)

<신설>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공 인공지능·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1. 목적</u> <u>2. 명칭</u> <u>3. 사무소의 소재지</u> <u>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u> <u>5. 회원의 자격, 가입·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u> <u>6. 임원에 관한 사항</u> <u>7. 회비에 관한 사항</u> <u>8. 총회에 관한 사항</u> <u>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u> <u>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u> <u>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u> <u>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u>
<u>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u>	<u>제1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u> ----- <u>인공</u> <u>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해야 한다.

1. ~ 5. (생략)

6.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운영
실태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6.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

7.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
반 행정 -----

----.

제22조(인공지능 활용 역량 인증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공무원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역량 수준별 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기준·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신 설>

<신 설>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관련 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자격·경력,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2. 인공지능 관련 교육의 운영 실적, 수행능력 및 교육과정의 전문성
3. 교육 내용·방법 및 교육 성과관리 체계의 적절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24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이

<신 설>

하 “영향평가”라 한다)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2. 인공지능의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 발생 가능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영향평가의 절차 등 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영향평가 적용의 예외)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정책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이미 영향평가를 실시한 인공지능을 동일한 목적·대상

<신 설>

<신 설>

범위 및 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재도입하는 경우

3.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능·
효과 검증 목적으로 한시적으
로 운영하는 경우

4.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제26조(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의 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
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
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영향평
가 실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회신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

제27조(영향평가의 결과 공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

<신 설>

<신 설>

항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거나 요약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 결과의 공표 방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영향평가 실시의 의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영향평가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제29조(영향평가의 재실시) 공공기관의 장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

	<u>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u> <u>1. 자동화 수준 상향, 행정 결정 지원 수준 변경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u> <u>2. 영향 대상 또는 이용자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u> <u>3. 그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u>
<u>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u>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u>데이터기반행정</u>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생략)	<u>제19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u> ① -----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② (현행과 같음)
<u>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u>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u>데이터기반행정</u>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u>데이터기반행정</u>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u>제20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u> ①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② ----- ----- <u>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u> ----- -----

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신 설>

-----.

제30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시

행)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
2조제4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받
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안전사
고 및 권리침해 등에 대비하여
위험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구조

2. 담당자 지정 및 기록·로그
관리 계획

3. 성능 및 안전성 점검·검증
절차

4. 오류·편향·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 운영 중단·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 민원·이의제기·피해구제
절차 안내 및 운영

③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2717